

# 2023년 신진여성연구원 산업현장진출 지원사업 모집 공고

중소·중견기업의 R&D인력 확보 애로 해소 및 신진여성연구원의 산업 R&D분야 진출과 성장을 지원하고자, 2023년「신진여성연구원 산업현장진출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4월 17일

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이사장 문애리

## 1. 사업 목적

○ 중소·중견기업의 여성R&D인력 채용 및 역량강화 지원으로, 산업현장의 신진 여성연구원 진출 촉진 및 역할 증대

## 2. 신청 자격

#### 가. 지워 인력

- 「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조에 따른 여성 인력으로,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지원 자격 취득 여성
  - ※ 2023년 8월 졸업예정자 포함

#### 【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】

제2조(정의) 「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.

-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이학(理學) 또는 공학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여성 가.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대학, 산업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
  - 나.「고등교육법」제29조 제1항에 따른 대학원
  - 다.「고등교육법」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
  - 라.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
- 2.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여성
- 3.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위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여성
- ※ 의학계열 또는 산업 디자인 분야의 학위 소지자인 경우 연구개발인력으로 채용 시 신청 가능
- ※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이공계 계열에 한함
- ※ 인력이 경력이 없어도 사업 신청 가능



#### 나, 지워 기업

- 사업신청일 기준, 연구소(연구개발부서)를 보유한 중소·중견기업 ※ 하기 조건 중 1개에 해당하는 기업 신청 가능
  - 기업부설연구소/연구개발전담부서: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4조의2에 의해 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인정받은 기업
  - 벤처기업: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
  - 연구소기업: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제9조의 3,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설립한 기업
  -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이노비즈):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
  - 연구개발서비스업: 「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」제18조에 의해 연구개발서비스 업자로 인정받은 기업
- 기업별 총 2명까지 지원인력 신청 가능

## 3. 지원 개요

- 가. 지원 기간: 2023년 6월 1일 ~ 2023년 10월 31일(5개월)
- 나 선정 규모: 00명 이상
- 다. 지원 내용: 신진여성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·중견기업에 해당인력의 인건비 일부 및 교육훈련 지원
  - **인건비 지원**: 기업에 지원인력당 1,000만원(약 200만원/월, 총 5개월) 지원
    - ※ 기업은 지원인력에게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2,7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
    - \* 기준연봉: (기본급+월정액수당)×12개월, 상여 포함, 퇴직금 제외
    - ※ 지원기간 종료 시까지 최초 선정인력 고용 유지 시, 추가 지원금 지급 예정
  - **교육 지원**: 신규 채용 신진여성연구원 대상으로 교육훈련 지원
    - ※ 지원기업은 지원인력이 교육훈련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
    - ① (필수) 연구역량 강화 교육 지원
      - ※ 선정된 인력 대상으로 차후 별도 안내 예정
    - ② (필수) 전문기술 교육비 지원
      - ※ 자기주도형 전문기술교육비 지원: 1회/인 이상 신청 필수, 100만원/인 이내

#### 라. 지원 조건

- 2023.01.01.~2023.06.01. 기간 사이에 채용을 했거나 채용 예정인 경우
  - ※ 정부지원금은 2023년 6월 급여부터 지원



## 4. 신청 방법

가. 신청 기간: 4월 17일(월) ~ 5월 16일(화)

나. 신청 방법: W브릿지 사이트(www.wbridge.or.kr)에서 온라인 접수

% W브릿지 접속 및 로그인  $\rightarrow$  일자리  $\rightarrow$  신진여성지원  $\rightarrow$  신청서 작성 및 제출

※ 기업과 채용(예정)인력 모두 사업 신청을 완료하여야 함

## 다. 제출서류

#### ○ 신청기업

구분	제출서류	제출 시 유의사항	
1	기업 신청서 (서식 1호)	- W브릿지(www.wbridge.or.kr)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제출	필수
2	사업자등록증	- 신청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	
3	기업 자격요건 증빙서류	-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-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- 벤처기업 확인서 - 이노비즈 확인서 - 연구소기업 등록증	필수
4	연구개발인력 현황 (서식 2호)	- [서식1호] 연구개발인력 현황	필수
5	국세청 발급 재무제표증명원	- 국세청에서 발급된 2020년~2022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- 2022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2019년~2021년 제출	필수
6	중견기업 확인서	- 중견기업확인서	해당 시
7	가점 증빙서류	- 가족친화인증서 사본 - 여성기업확인서 사본 -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서 사본	해당 시
8	기타	- 기업 재산권관련 서류(특허등록 및 출원증빙자료 등) 사본	해당 시

※ 인증서류 및 증빙서류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



#### ○ 신청인력

구분	제출서류	제출 시 유의사항	비고
1	인력 신청서 (서식 3호)	- W브릿지(www.wbridge.or.kr)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제출	필수
2	학위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	- 신청 인력의 최종학위증명서 또는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(또는 그 이상 자격의) 자격증 사본 -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제출	필수
3	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	※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(http://total.kcomwel.or.kr) 개인 공동인증서 로그인 → 증명원 신청 발급 → 고용·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→ 보험구분(고용), 조회구분(상용) → 고용/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(전체) 출력 - 공고일 이후 발급본 제출(공고일 이전 발급본 불인정) - 화면 캡쳐본 불인정 - 채용예정인 경우 선정 후 협약 시 제출	필수

## 5. 선정절차 및 평가

#### 가. 평가기준 및 방법

- 요건심사 및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여, 평가 결과 60점 미만일 경우 탈락
- 평가 기준 및 방법 ※ 선정평가 심사를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

절차	평가 기준 및 방법		
요건	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<b>기본 자격요건의 부합여부</b> 심사		
심사	○ (심사항목) 신청자격 부합성, 참여제한 여부,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여부 등 검토 ○ (심사결과 조치) 신청내용이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을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		

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에서 지원여부 서면평가

○ (평가방법) 신청서 및 관련 서류에 대하여 서면평가 실시 평가결과 60점 미만인 기업 탈락, 고득점 순으로 선정(총 50명 이상) 학사 학위자 70% 이상 선발

지표 배점 경영· 성장성, 수익성, 안전성, 활동성 등에 대한 재무 건정성 20점 재무역량 연구장비·시설·공간 등 연구인프라 보유 정도 산업재산권 및 연관 기술/연구과제 실적 보유 정도 연구개발 20점 역량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실적(최근 3년간) 기업 사업성과의 실현가능성 인력활용 및 기술연구개발 목표의 구체성 인력활용 사업수행 계획 및 수행능력 계획 20점 - 인력양성 및 활용계획의 타당성 우수성 - 활용계획의 실현가능성 인력매칭 담당 업무(연구분야)와 전공 일치도 인력 30점 평가 개인의 R&D 분야 발전 가능성 정규직 채용, 지방소재 기업 등 우대가점 10점 합계 100점

선정 평가



### ○ 우대 사항(총 10점)

구분	우대 사항	증빙 서류	배점	
1	지원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	_	2점	
2	지방소재(서울, 인천, 경기 외의 지역) 기업	인력 근무지 기준	2점	
3	가족친화 우수기업	가족친화인증서	2점	
4	초격차 분야 기업		1점	
5	2022년 K-Girls' Day 참여 기업	WISET에서 자체 확인 예정	1점	
6	여성기업	여성기업확인서	1점	
7	청년친화 강소기업	청년친화 강소기업 인증서	1점	
합계				

- ※ 각 우대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.
- ※ 초격차 분야: 반도체, 디스플레이, 이차전지, 미래모빌리티, 핵심소재, 지능형로봇, 첨단제 조. 항공·방산, 차세대원자력, 첨단바이오, 에너지신산업

#### 나. 선정 결과

○ W브릿지(www.wbridge.or.kr)에 선정공고 공지

#### 다. 선정절차 및 일정



※ 상기 절차 및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 6. 유의사항

- 지원 선정된 기업 및 인력은 신청 자격을 상시 유지하여야 함
- 정부지원금은 지원인력의 인건비로만 사용 가능
- 사업의 수혜를 받은 기업 및 인력은 지원종료 후 2년까지 인력의 경력현황에 대한 육성재단의 조사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음
-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함



- 사전 지원대상 제외 기업 및 인력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, 타 정부지원사업에서 인건비 이중수혜가 발생할 경우, 기업 및 인력의 신청자격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등
- 이 경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※ 정부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내역 확인방법 : 워크넷(www.work.go.kr) → 마이페이지 홈
  → 온라인 신청관리 → 정부지원 일자리 탭 선택 → 일자리 참여 내역 조회(일자리 신청
  내역 아님, 지원인력 개인이 조회 가능, 협약 시 증빙서류 제출)
- ※ 교육훈련 참여 및 참여기간이 종료된 건은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않음
- 지원 인력은 연구개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함
- 지원기업은 인력이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(필수)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, 인력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평가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
- 지원기간 중 지원인력 퇴사 시, 잔여 지원기간이 2개월 이상 남아 있을 경우에 한하여 매칭조정심의를 거쳐 대체인력 지원 가능
- 동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인력은 상호간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, 기업은 인권경영 이행 및 조치에 협조해야 함
- 위의 준수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, 사업 협약 해약이 가능함

## 7. 문의처

-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사업운영실 R&D경력복귀지원팀
  - 02-6411-1064 / cmh125@wiset.or.kr
- 문의전화가 많아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,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문의 바랍니다.



## 참고 1

## 사전지원제외 대상

#### □ 신청 기업

- 신청 기업, 기업의 대표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기업
- 다음의 '신청제외 기관'에 해당하는 경우

#### < 신청제외 기관 >

- 1. 기업의 부도
- 2.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 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 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)
- 3.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)
- 4.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)
- 5.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(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%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.)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(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'BBB' 이상인 경우,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 평가 등급이 "BBB"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 비율이 50%이상이며,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,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.) 이때,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  - ※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(CB, BW)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(RCPS)는 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
  - ※ 상기의 신용등급 'BBB'에는 'BBB+'. 'BBB'. 'BBB-'를 모두 포함함
- 6.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
- 7.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



#### □ 신청 인력

- 한국인(대한민국 국적)이 아닌 자
- 동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인력(중도협약해약자 포함)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인력
- 신청 기업의 대표자가 참여인력으로 신청한 경우
- 최종 퇴사일 기준 1년 이내 신청기업에 재입사한 자
- 신청 기업의 대표(사업주)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

#### < 친족관계>

#### 【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】

- 1. 6촌 이내의 혈족
- 2. 4촌 이내의 인척
- 3.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)
- 4.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·직계비속

### □기타

○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동 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.



# 참고 2 2023년 사업 추진 절차

절차	내용	수행주체
사업 공고	· 신규 지원 기업 및 인력 모집 공고	WISET
1		
사업 신청 접수	· 사업 신청서류 접수 (온라인, www.wbridge.or.kr) ※ 기업과 인력 모두 신청하여야 함	신청기업 신청인력
<b>1</b>		
선정평가	· 선정평가 진행 및 결과 통보	WISET 평가위원단
•		
협약체결 사업비 지급	· 선정 기업 대상 협약체결 진행 후 사업비 지급	WISET 지원기업/인력
1		
지원인력 교육훈련 지원	· 지원인력 연구역량강화 교육(필수) · 자기주도형 전문기술 교육비 지원(필수)	WISET 지원인력
1		
중간점검 및 현장점검	· 사업수행 중간점검 및 현장점검	WISET 지원기업/인력
•		
결과보고 접수 및 사업비 정산	· 결과보고서 접수 ·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에 대한 회계정산 실시	WISET 지원기업/인력
<b>1</b>		
추가 지원	· 추가지원 대상 추가지원금 지급 (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유동적)	WISET

※ 상기 절차 및 일정은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관련하여 별도 안내 예정